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9. 10. 3.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목차

목차	2
요약	3
조사 취지·목적 및 조사 개요	5
1. 조사 취지와 목적	5
2. 조사개요	7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취업제한심사 전체 현황	8
1.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취업제한심사 현황	8
2.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취업가능’ 기관 유형	10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평가	16
1. 취업제한심사 및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개요	16
2. 공정위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기관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17
3. 관세청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기관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19
4. 국세청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기관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21
5. 금감원·금융위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기관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24
※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례	28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현황	31
1. 2015.6.~2019.5.기간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결과	31
결론	35

-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을 조건으로 재직 중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고, 퇴직 후 취업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현직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취업제한심사)받거나 취업승인심사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해 전현직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2명이 퇴직자 재취업 알선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 까지 진행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음.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며, 금융위나 금감원도 과거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민간영역을 감독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있는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 조사기간 2015.6.~2019.5. 동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임.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으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대상자의 96.7%에 이룸.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융감독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100%), 7명(100%)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신청해 받은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심사 후 소매업(27.8%) 외 다양한 분야의 기관으로 취업하고 있지만, 관세청은 사업시설 관리 업체와 유관 협회·단체에 많이 취업하고(각각 47.4%, 39.0%), 국세청 퇴직공직자는 세무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에(33.3%),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35.4%), 협회·단체(12.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8.3%) 분야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
- 참여연대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173명의 업무관련성을 재검토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됨.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1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으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사례로는
 - ▲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하다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음.
- 2015.6.~2019.5. 기간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68명이며 이중 61명(89.7%)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짐.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2명이 취업승인심사를 받아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46명이 심사를 받아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음. 국세청은 심사를 받은 5명 중 4명, 금융감독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원회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음. 취업승인 사유로 가장 많이 제시된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이며, 이들 사유는 모두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보아 취업을 승인하는 기준임.
- 취업제한심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퇴직공직자들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심사 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심사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장기적으로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 함.

조사 취지·목적 및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와 목적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내용과 취지

- 공직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직무수행과 개인의 사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 공직자들은 퇴직 이후 재취업을 조건으로 재직 중 특정 인물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 로비스트가 되어 현직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특히 주요 정책 결정, 인·허가, 조세·징수, 공공계약, 수사 및 조사 등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일정 직급 이상(4급 이상 공무원 및 특정 기관·직무의 5급~7급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의 퇴직공직자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혹은 소속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이하 취업제한심사)받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받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취업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승인받을 경우(이하 취업승인심사)에만 예외적으로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이 인정됨.¹

2) 5개 기관(관세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한 이유

- 관세청은 관세를, 국세청은 내국세를 부과·징수·감면하는 사무를 관장하면서 통관 및 밀수단속, 세무조사 등 집행할 권한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을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처분할 권한이 있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조사 후 시정 명령이나 임원 해임권고,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권한이 있음.²

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참고

²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참고

- 관세청,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5개 기관의 권한은 민간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들 기관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또한 퇴직자가 유관기관에 취업해 직무관련자가 되어 부당한 청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였음. 또한 이들 기관의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인력풀(pool)도 좁아 전현직 공직자들이 폐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다고 평가됨.
- 이러한 이유로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등 3개 기관은 보통 4급 이상 공무원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7급 공직자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 역시 4급 이상 직원³이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됨. 공정위 소속 공직자도 검사·감독, 지도단속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7급 공무원까지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⁴
- 실제로 공정위의 경우 민간기업 재취업 알선 혐의로 전현직 위원장, 부위원장 등 지난해 12명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2심까지 진행된 이 재판에서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 피고인들도 사유에 따라 벌금 300만~500만, 집행유예 등 선고받음⁵.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도 과거 퇴직 후 금융계 재취업 후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방조·가담하거나,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와의 유착으로 인해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민간 금융사에 강한 처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⁶
- 국세청과 관세청 출신 퇴직공직자 역시 세무당국과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고자하는 민간기관이나 기업, 법무·세무법인의 취업 제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⁷ 이들 퇴직공직자가 본인의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현행 세무행정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게 하거나, 현직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퇴직후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이들 5개 기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³ 이에 대해 최중구, 윤석현 등 전현직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 직원 4급까지 취업제한에 포함한 현 규정이 너무 엄격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역시 2급 이상 직원까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올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함. 뉴시스, 2019.7.22, <금감원 직원 재취업제한...헌재 "위헌 여부 재판단"> 참고

⁴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17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참고

⁵ 세계일보, 2019.7.26., <'공정위 불법 취업' 정재찬 전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⁶ 한국경제, 2011.5.2., <금감원 출신 감사가 분식회계 공모...오히려 부실 더 키웠다>
동아일보, 2014.4.16., <숨방망이 처벌 - 구명난 감사가 금융비리 키워>

⁷ 노컷뉴스, 2018.10.10. <박영선 "관세청 직원들, 퇴직 후 버젓이 유관기업 재취업">
세정일보, 2019.5.21, <[세리포트] 현대백화점에 따리 튼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들>

2. 조사개요

1) 조사대상자

-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위 소속 퇴직공직자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자

2) 자료조사 방법 및 기간

- 2015.6.1.~ 2019.5.31. 4년 동안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청구
※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각 기업의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등록 자료 및 웹사이트 정보, 언론보도 내용,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등을 자료로 활용함.

-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6월 ~ 2019년 5월

※ 10월 진행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추기 위해, 편의상 전년도 하반기에 해당하는 6월부터 차년도 상반기에 해당하는 5월 말까지를 1년 주기로 정해 정리함.

3) 조사내용

-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취업제한’ 현황 및 그 사유
-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업 유형 현황
-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취업한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중 전 소속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사례
-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승인/불승인’ 현황 및 취업승인 사유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취업제한심사 전체 현황

1.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취업제한심사 현황

- 2015.6.~2019.5. 4년 동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전체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는 모두 2,078명이며, 이 중 1,930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취업가능' 결정 비율은 92.9%에 달함. 2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원 및 기타 특정 분야의 공무원 등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모두 519명이 취업제한심사를 받았으며, 이중 85.6%에 해당하는 444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인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등 5개 기관의 퇴직공직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2015.6.~2019.5. 기간 동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179명 중 173명(96.7%)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이들 5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사·감독 권한이 개별 민간 기관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 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비율(96.7%)이 그 외 나머지 기관의 '취업가능' 비율(92.5%, 1,899명 중 1,757명 '취업가능')을 상회한다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5.6.~2019.5.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모두 10명이었고, 이들 중 8명(80%)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이들 5개 기관 외 나머지 정부 부처의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가능' 결정 비율(85.7%, 509명 중 436명 '취업가능')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임.

[표1] 2015.6.~2019.5. 공정위·관세청·국세청·금감원·금융위와 그 외 정부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 비교

단위: 명

기관	취업제한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심사 대상자)	취업가능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	취업제한 (기관업무기준 심사 대상자)	취업가능 비율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179 (10)	173 (8)	6 (2)	96.7% (80%)
상기한 기관을 제외한 전체 정부 부처·기관	1,899 (509)	1,757 (436)	142 (73)	92.5% (85.7%)
전체	2,078 (519)	1,930 (444)	148 (75)	92.9% (85.6%)

- 2015.6.~2019.5. 기간 동안 매년 36명~50명 수준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받고 있음. 취업제한심사 결과 이들 5개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5.6.~2016.5.기간(91.3%)을 제외하면, 매년 96% 이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2015.6.~2019.5.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을 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15.6.~2016.5. 기간 동안 전체 심사대상자 46명 중 42명 취업가능(91.3%),
2016.6.~2017.5. 기간 동안 전체 심사대상자 50명 중 50명 취업가능(100%),
2017.6.~2018.5. 기간 동안 전체 심사대상자 36명 중 35명 취업가능(97.2%),
2018.6.~2019.5. 기간 동안 전체 심사대상자 47명 중 46명 취업가능(97.9%)
- 2015.6.~2019.5.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총 6명임.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가 4명이었던 2015.6~2016.5. 기간을 제외하면, 2016.6.~2019.5. 기간 동안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 지난 3년 동안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는 빈도는 1년 평균 1명이 채 되지 않음.

[표2] 2015.6.~2019.5.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기간별 취업제한심사 결과

단위: 명

기간	취업제한심사 대상자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가능 비율
2015.6.~2016.5.	46	42	4	91.3%
2016.6.~2017.5.	50	50	-	100%
2017.6.~2018.5.	36	35	1	97.2%
2018.6.~2019.5.	47	46	1	97.9%
전체	179	173	6	96.7%

- 2015.6.~2019.5. 기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전체 퇴직공직자 수는 공정위 20명, 관세청 60명, 국세청 48명, 금감원 44명, 금융위 7명임.

- 2015.6.~2019.5 기간 각 기관별 취업제한심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공정위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 ‘취업가능’(90%),
관세청 퇴직공직자 60명 중 59명 ‘취업가능’(98.3%),
국세청 퇴직공직자 48명 모두 ‘취업가능’(100%),
금감원 퇴직공직자 44명 중 41명 ‘취업가능’(93.2%),
금융위 퇴직공직자 7명 모두 ‘취업가능’(100%)

[표3] 2015.6.~2019.5.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각 기관별 취업제한심사 현황

단위: 명

기관명	취업제한심사 대상자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가능 비율
공정위	20	18	2	90.0%
관세청	60	59	1	98.3%
국세청	48	48	-	100%
금감원	44	41	3	93.2%
금융위	7	7	-	100%
전체	179	173	6	96.7%

2.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취업가능’ 기관 유형

- 이 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관인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는 각기 정해진 특정 사무 영역 내에서 감독·조사 권한을 집행하고, 이들 기관을 퇴직한 공직자들은 그와 관련된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이들 5개 기관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취업한 기관의 유형을 살펴봄

※ 취업 기관 유형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1) 2015.6.~2019.5.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공정위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관 유형

- 2015.6.~2019.5. 기간 취업제한심사를 신청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분야는 '소매업(백화점, 마트 등 종합소매업과 전자상거래 등 무점포소매업)'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18명 중 5명(27.8%)이 이에 해당함.
- 2015.6.~2019.5. 기간 공정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한 분야 중 '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기관은 모두 9개이며, 이들 각 분야는 공정위 출신 취업자가 3명을 넘지 않음. 즉 해당 기간 동안 공정위 퇴직공직자는 대체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관·기업에 고르게 취업했다고 볼 수 있음.

[표4] 2015.6.~2019.5. 공정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관 유형

※ 업체유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No.	기관 유형	취업자 수(비율)	특징
1순위	소매업	5명 (27.8 %)	종합소매업(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4명, 무점포소매업(전자상거래) 1명 취업
2순위	전문서비스업	3명 (16.7 %)	법무법인 2명, 경영컨설팅업체 1명 취업
기타	협회 및 단체,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업, 도매업, 종합건설업 및 자동차 등 3개 제조업 제조업 분야 등 8개 분야	10명 (55.5 %)	-
전체		18명 (100%)	퇴직공직자 재취업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기 보다는 여러 분야 기관에 고르게 취업

2) 2015.6.~2019.5.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관 유형

- 2015.6.~2019.5. 기간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 특정 기관으로 취업이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음. 가장 많이 취업한 분야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전체 관세청 퇴직공직자 59명 대비 28명(47.4%)이 취업함. 그런데 이 분야로 취업한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한 업체(삼구아이앤씨)에 취업했다는 점에 주목할만함.
- 2015.6.~2019.5. 기간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두번째로 많이 취업한 분야는 '협회 및 단체'이며,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 59명 중 총 23명(39%)이 이에 해당함.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협회 및 단체'의 대다수는 '한국면세점협회'이며,

22명의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보세사’⁸의 자격으로 이 협회에 취업함.
 나머지 1명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취업.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특정 자격조건에 따라
 재취업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은 관세청의 인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관세청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제한심사가 아닌
 취업승인심사를 받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음.

[표5] 2015.6.~2019.5.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취업확인 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관 유형

※ 업체유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No.	기관 유형	취업자 수(비율)	특징
1순위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8명 (47.4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28명 취업. 이중 27명이 (주)삼구아이앤씨에 취업. 이 업체의 주요 용역 업무는 공항 세관 전자택 부착, 면세점물류센터, 외곽특경대 등
2순위	협회 및 단체	23명 (39.0 %)	22명이 한국면세점협회에 보세사로 취업했고, 1명이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로 취업함
3순위	사업 지원 서비스업	3명 (5.1 %)	3명 모두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체에 취업함. 모두 같은 업체이며, 세관지원 업무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기타	공공기관, 부동산업, 숙박업, 운송업 등 4개 분야 취업	5명 (8.5 %)	-
전체		59명 (100%)	특정 기관(삼구아이앤씨, 한국면세점협회)에 집중 취업한 경향

⁸ <관세법> 제164조에 따라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하는데, 이 때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보세사)을
 채용해야 함. 같은 법 제165조에 따라 보세사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자격이 부여되며,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 후 보세사로 근무하게 됨.
 이와 관련해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인의 보세사 전형 합격률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세청
 공직자가 5년이상 근무 시 보세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게 한 제도가 관세청 인사적체 해소 및 퇴직자의 재취업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2018.10.11., 머니투데이, <[국감]"관세청 5년 일하면 보세사 취득"...형평성
 논란> 참고

3) 2015.6.~2019.5.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국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관 유형

- 2015.6.~2019.5. 기간 국세청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한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결정 48명 중 '전문서비스업' 영역이 16명(33.3%)으로 가장 많음 알 수 있음. 국세청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다수는 '세무·회계법인'으로 모두 15명이 취업함.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도 1명 있음.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즉 3급 이하 공무원 중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가능하며, 국세청 퇴직공직자의 회계·세무법인 취업이 많은 것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도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⁹
- 2015.6.~2019.5. 기간 국세청 퇴직공직자들은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도 각각 4명(8.3%), 3명(6.3%), 3명(6.3%) 씩 취업함. 이 외에도 국세청 퇴직공직자들은 취업제한심사에서 제조업, 건설, 공사업, 소프트웨어개발, 공공기관 등 18개 분야의 기관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표6] 2015.6.~2019.5. 국세청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관 유형

※ 업체유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No.	기관 유형	취업자 수 (비율)	특징
1순위	전문 서비스업	16명 (33.3 %)	세무·회계법인(15명), 법무법인(1명)
2순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명 (8.3 %)	기초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1명) 및 의약품 제조업(3명)에 취업
3순위	금융업	3명 (6.3 %)	은행(2명), 지주회사(1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명 (6.3 %)	증권회사(3명)
기타	광업, 식료품 등 9개 제조업 분야, 건설, 공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기관 등 18개 분야	22명 (45.8 %)	-

⁹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전체	48명 (100%)	전문 서비스업(세무법인)에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취업함.
----	---------------	-----------------------------------

4) 2015.6.~2019.5.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감원·금융위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관 유형

- 2015.6.~2019.5. 기간 금감원과 금융위 퇴직공직자 48명이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취업한 기관들을 살펴보면 '금융업' 분야가 17명(35.4%)으로 가장 많고, '협회 및 단체'에 6명(12.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4명(8.3%) 순으로 취업함.
- 2015.6.~2019.5. 기간 금감원과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한 기관의 과반수(56.2%, 27명)가 사실상 금융 관련 기관이라 볼 수 있음. 17명(35.4%)이 취업한 금융업은 물론, 4명(8.3%)이 취업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도 '증권 및 선물중개업(금융투자사)' 기관으로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는 기관임.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6명(12.5%)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협회 및 단체'도 한국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모두 금융업과 관련된 협회였음.
- 2015.6.~2019.5. 기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금감원과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은 금융업과 관련된 기관 외에도 21명(43.8%)의 심사대상자가 제조업,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공공기관 등 13개의 다양한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표7] 2015.6.~2019.5. 금감원·금융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관
※ 업체유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No.	기관 유형	취업자 수(비율)	특징
1순위	금융업	17명 (35.4%)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3명), 캐피탈·대부업 등 여신금융업(3명), 은행 및 저축기관(9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명), 기타 금융업(1명)
2순위	협회 및 단체	6명 (12.5%)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코스닥협회,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각 1명 씩 취업
3순위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4명 (8.3%)	증권 및 선물중개업(금융투자사) 4명 취업

기타	펄프, 종이제품 등 8개 분야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연구개발업, 연수원 및 대학교 등 교육서비스업, 공공기관 등 13개 분야	21명 (43.8%)	-
전체		48명 (100%)	금감원·금융위 퇴직자 과반수가 금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금융업계로 재취업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평가

1. 취업제한심사 및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개요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업제한기관¹⁰에 취업할 수 없음.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름.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 특히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에 소속된 공직자들은 민간기관을 감독하거나, 조사나 검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어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간기업의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그에 따른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음.
따라서 이들 5개 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심사가 보다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¹⁰ 자본금이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법무·세무·회계법인 및 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특정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포함.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참고.

- 따라서 2015년 6월~2019년 5월 기간 동안 위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충분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참고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개별 사례를 다시 확인함.
-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의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여부 평가는 각 기관 홈페이지와 직제 및 업무규정¹¹에 기재된 각 기관·부서의 업무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퇴직 후 취업한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사업 및 취업한 직위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음.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각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채용공고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기관의 정보, 언론보도 등 참고해 확인함.
- 참여연대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의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 사례(173명)를 재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기관으로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개별 기관으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1명, 금감원 11명, 금융위 4명의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가 이에 해당함.

2. 공정위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기관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 2016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위에서 퇴직한 후 3년 내에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심사를 받고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퇴직공직자 18명 중 특히 5명(27.8%)은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거나 의심됨에도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은 공정위 퇴직공직자의 사례는 주로 공정위 퇴직 전 신고사건 처리, 조사 및 정보수집, 시장 감시 및 시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재직했다가 그 업무의 대상이 되는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경우임.
- 공정위 퇴직공직자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사례
 - 공정위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 기법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하도급개선과를 2015년 12월 퇴직해 2016년 2월에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 기업인 (주)만도에 비상임고문으로 취업한 경우. (주)만도는 해당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시기 직전인 2014년 9월~2015년 7월까지

¹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참고함.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2017년 3월에 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음.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감시·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감시국에 근무했다가 2016년 4월 퇴직해 온라인 유통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쿠팡’ 운영사인 포워드벤처스(현 쿠팡 주식회사)에 이사로 취업한 경우. 쿠팡은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지난 2018년 공정위 과징금 처분(공정위 사건번호 2016유통2380)을 받은 바 있고, 공정위 퇴직자의 조직적인 재취업 알선 대상 기업 중 하나로 지목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음.¹²
-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와 경쟁과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3월 퇴직해 그 해 5월 관할 구역 내 반도체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에 고문으로 취업한 경우. 동일 기관·부서 출신으로 SK하이닉스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어 취업제한심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엄격히 이루어지는지 비판할 수 있음.

[표8] 2015.6.~2019.5. 공정위 퇴직공직자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참여연대 검토 결과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의심되는 사례(5명)

N o.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업무연관성 판단 내용	판단 근거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제2항)
		취업예정 기관/직위			
1	서울사무소 경쟁과 / 공정거래위원회 포렌식 T/F팀장 / 정보화담당관	2015-03-23	2015-07-01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문판매 관련 고시 위반, 대규모 소매업점 관련 고시 등 신고사건을 처리함.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거래 소송 분야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공정거래 소송을 수임해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제7호, 제8호
		법무법인 광장 / 전문위원			
2	기획재정담당관 / 제조하도급개선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 단 / 공로연수	2015-12-31	2016-02-01	후보자가 재직한 제조하도급개선과는 제조 분야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제조 분야의 하도급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기법 개발 등 수행함. 퇴직 후 취업한 ㈜만도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 기업이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17년 3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음.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6호, 제8호
		㈜만도 / 비상임고문			

¹² 2018.7.5., 경향신문, <검찰, 공정위 퇴직자 수사 확대...현대차·쿠팡 등 4곳 압수수색>

3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실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2016-04-25	2016-5월(심사후)	(주)포워드벤처스(현 쿠팡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업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쿠팡'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사건번호 2016유통2380). 또한 쿠팡은 공정위 퇴직자의 조직적인 재취업 알선 대상 기업 중 하나로 지목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음. 해당 산업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조사·시정 업무를 수행하는 카르텔조사국과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제6호, 제8호
		(주)포워드벤처스 / 이사			
4	협력심판담당관실(5급) /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4급) / 서울사무소경쟁과(4급)	2018-03-16	2018-05-01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서울, 경인, 강원 소재 사업자들의 자유 경쟁 보장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을 처리함.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업체이며, 본사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함.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경쟁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의심됨. 공정위 내 동일 부서·직급 퇴직공직자가 SK하이닉스 취업이 제한된 사례도 있음.([표12] 참고)	제6호, 제8호
		SK하이닉스(주) / 고문			
5	기획재정담당관실(5급 →4급) / 서비스업 감시과(4급) / 카르텔총괄과(4급)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 소 건설하도급과장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 소장	2018-06-18	2018-08-01	퇴직 전 재직했던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전, 세종, 충청지역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정 업무를 수행함. 퇴직 후 취업한 기관이 본사를 대전에 두고 있고, 사업장의 대부분이 충청권에 소재한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제6호, 제8호
		계룡산업(주) / 비상근고문			

3. 관세청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기관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 기간 동안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59명 중 중 최소 4명은 퇴직 전 업무가 취업한 기관의 사업과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평가됨.
-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사례

- 안산세관과 안양세관에서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분장하는 통관국 아래 통관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면세물품 통합물류창고와 면세물품 인도장 등 운영하는 (사)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경우
- 서울세관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휴대폰 통관 및 세관 보조 업무 등 업무를 수주한 인력공급업체 KTS글로벌의 공항사업본부소장으로 취업한 경우
- 2015.6.~2019.5. 기간동안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취업한 관세청 퇴직공직자 59명 중 (사)한국면세점협회에 보세사로 취업한 사람이 22명(37.3%)으로 매우 많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임.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이 소관하는 비영리기관으로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관세청 감사대상인 기관임.
 -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는 모두 퇴직 전 세관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후 보세사 자격으로 취업함. 이는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물품 통합물류창고와 면세물품 인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관세법상 면세물품을 보관·유통하기 위해서는 보세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관세법상 관세행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직자에게는 보세사 자격이 주어지나, 민간인도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 취득가능한 자격임. 특정 자격 조건으로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공직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채용이 가능하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분야로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상 영향력 행사가능성 등을 심사받아야 할 것임.
- 공항세관의 전자택 부착 업무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주)삼구아이앤씨에도 세관 출신 공직자 27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점 역시 눈여겨 볼 사항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나, 퇴직 공직자들이 대부분 6급~7급 공무원이고 취업예정 직위도 현장노무자라는 명목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것을 감안해 아래 [표9]에는 포함하지 않음.

[표9] 2015.6.~2019.5.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참여연대 검토 결과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의심되는 사례(4명)

N O.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업무연관성 판단 내용	판단 근거 (공직 자윤리 법 제17조 제2항)
		취업예정 기관/직위			

1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2검사관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관세 6급)	2015-09-30	2016-01-01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물품 통합물류창고와 면세물품 인도장을 운영·관리 하고 있음. 통합물류창고의 물품반입은 세관 신고사항이고, 세관은 반입검사를 진행함. 면세품 인도장 업무 역시 세관의 관리·감독 대상임. 안산세관의 통관지원과 ¹ 는 보세화물을 담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특정 자격조건으로 취업한다고 해도 취업승인심사를 거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제6호, 제8호,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2	인천공항세관 조사총괄과 / 서울세관 도라산사무소장	2015-10-20	2016-01-01	KTS는 공항에서 휴대품 통관 등 안내 및 세관보조 업무를 사업분야 중 하나로 두고 세관 도급업무를 수주한 바 있음. 인천공항세관 조사총괄과, 서울세관 사무소장의 업무와 KTS글로벌의 공항사업본부소장의 업무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제5호
		(주)KTS글로벌 / 공항사업본부소장			
3	용당세관 납세심사과장 / 수원세관 납세심사과장 / 수원세관 조사심사과장 / 안양세관 통관지원과장 / 관세청(5급):공로연수	2018-06-30	2018-09-01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물품 통합물류창고와 면세물품 인도장을 운영·관리 하고 있음. 통합물류창고의 물품반입은 세관 신고사항이고, 세관은 반입검사를 진행함. 면세품 인도장 업무 역시 세관의 관리·감독 대상임.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과 관련된 업무는 통관국 소관(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므로 안양세관 통관지원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의심됨.	제6호, 제8호,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4	용당세관 납세심사과장: 용당세관장 직무대리 / 수원세관 납세심사과장: 수원세관장 직무대리 / 수원세관 조사심사과장 / 안양세관 통관지원과장 / 관세청(5급):공로연수	2018-06-30	2019-04-01	(주)그랜드관광호텔은 그랜드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면세점은 관세법 상 보세판매장으로 분류되고,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과 관련된 업무는 통관국 소관(<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참고 ¹)이므로 안양세관 통관지원과장의 업무의 관련성이 의심됨.	제6호, 제8호,
		(주)그랜드관광호텔 / 팀장			

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③ 통관국장 및 신항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세관 통관국장 및 신항통관국장은 다음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4.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세청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기관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 2015년 6월~2019년 5월 기간동안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국세청 퇴직공직자 48명 중 11명(22.9%)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됨.

- 퇴직 전 근무했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관할 내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은 조세 징수나 세무조사 등 공적업무와 관련이 되는 일을 수행하므로, 이들 기관에 취업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평가함.
- 특히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분류한 사례의 대부분(10명)은 근무했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관할 내 세무법인으로 취업한 사례임. 참고로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아닌 퇴직공직자(2급 미만 공무원 등)가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세무법인 취업이 가능함.¹³
- 국세청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개별 사례
 - 퇴직 전 5년 이내에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2015년 8월 퇴직해 2016년 6월 원주세무서 관할 내 세무법인인 세무법인명인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국세청 대상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조세분쟁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유한)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한 경우

[표10] 2015.6.~2019.5.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참여연대 검토 결과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의심되는 사례(11명)

N O.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업무연관성 판단 내용	판단 근거 (공직 자윤리 법 제17 조 제2항)
		취업예정 기관/직위			
1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 /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운영지원과(6급)	2015-08-31	2016-06-01	원주세무서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원주시 관할 내 세무법인에 재취업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제4호, 제8호

¹³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2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세무7급)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1과(세무7급)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1과(세무7급)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송무1과(세무7급) / 서울지방 국세청(세무7급) /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세무7급)	2015-01-24	2016-11-25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와 국세청 행정심판 및 조세심판원, 법원 소송 등 조세 분쟁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유한)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4호, 제8호
		법무법인(유한)바른 / 전문위원			
3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법인세과(세무6급) /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조사과(세무6급) /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조사과(세무6급)	2016-12-31	2017-03-31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금천, 강남,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과의 업무는 서울시 소재 세무법인 다솔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제4호, 제8호
		세무법인다솔 / 전문위원			
4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조사과(세무6급)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1과(세무6급)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송무1과(세무6급)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세무6급) /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무6급)	2016-12-31	2017-04-03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조사과의 업무는 서울시 소재 세무법인 다솔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제4호, 제8호
		세무법인다솔 / 전문위원			
5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무6급)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법인납세과(세무6급) /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1과(세무6급)	2016-12-31	2017-05-10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과의 업무는 서울시 소재 세무법인 이현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제4호, 제8호
		이현세무법인 / 자문위원			
6	서울종로세무서 소득세과(세무6급) / 서울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무6급) / 서울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무6급) / 서울성동세무서 법인납세과(세무6급)	2017-06-30	2017-08-25	광고세무법인은 수원에 본점, 서울 강남구에 지점을 두고 있는 세무법인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종로세무서, 송파세무서, 성동세무서의 소득세과, 법인납세과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제4호, 제8호
		광고세무법인 / 부장			
7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세무6급) / 서울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세무6급) / 서울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세무6급) / 서울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무6급)	2017-06-30	전문위원	세무법인다솔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세무법인임.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성동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의심됨.	제4호, 제8호
		세무법인다솔			

8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세무6급) / 서울 성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 강동세무서 재산세과장 / 종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2017-12-31	2018-3월	해당 퇴직공직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내국세의 징수, 체납액 정리 등 담당하는 징세과에서 근무하고, 서울 강동세무서와 종로세무서에서 재산세, 개인납세1과장의 업무를 담당함.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법인로고스와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제4호)	제4호, 제8호
		세무법인로고스/ 직원			
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세무6급) / 마포세무서 운영지원과(세무6급) / 마포세무서 조사과(세무6급) / 반포세무서재산세1과(세무6 급)	2018-12-31	2019-2월(심사후)	서울시 내 재산세제 등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비롯해 서울 마포, 반포세무서의 조사과, 재산세1과 업무는 서울에 본점을 둔 세무법인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4호, 제8호
		세무법인 세연 / 전문위원			
10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세무7급) / 안양세무서 개인납세2과(세무7급) / 시흥세무서 개인납세2과(세무7급) / 안산세무서 재산세과(세무7급)	2018-06-12	2019-04-01	세무법인신승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안양과 시흥, 안산에도 지점을 두고 세무컨설팅 등 운영함. 안양세무서 소득세과, 시흥세무서 개인납세과, 안산세무서 재산세과 등 퇴직 전 근무한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제4호, 제8호
		세무법인 신승 / 부장			
11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세무6급) / 동대문세무서 개인납세1과(세무6급) /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세무6급)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무6급) / 노원세무서(세무6급):공로연 수	2018-06-30	2018-08-20	서울지방국세청 하에 잇는 동대문세무서, 남대문세무서의 부가가치세1과, 개인납세1과 등 업무는 서울에 소재한 세무법인올림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4호, 제8호
		세무법인 올림 / 직원			

5. 금감원·금융위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기관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 2015년 6월~2019년 5월 기간 동안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감원 퇴직공직자 41명 중 11명(26.8%)이, 금융위 퇴직공직자 7명 중 4명(57.1%)이 퇴직 전 소속 부서·기관과 취업한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보임.

- 금감원과 금융위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들 중 퇴직 전 업무와 국세청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사례국세청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사례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은 주로 금융사, 금융 관련 협회 등으로 확인됨.
-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사례
 - 퇴직 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직원1급)에서 근무하고 2015년 12월 퇴직한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취업한 경우
 - 퇴직 전 5년 내에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서 근무했으나 2018년 12월 퇴직해 2019년 4월 (주)대한저축은행 상임감사로 취업한 경우
 - 금융위에서 퇴직 전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6월에 퇴직한 후 2016년 7월에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이자 금융위 피검기관인 (사)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

[표11] 2015.6.~2019.5.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참여연대 검토 결과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의심되는 사례(금감원 11명, 금융위 4명)

N O.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업무연관성 판단 내용	판단 근거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제2항)
		취업예정 기관/직위			
퇴직기관: 금융감독원(11명)					
1	저축은행서비스국장 / 연구위원 / 경기도 경제정책과 / 연구위원 / 제재심의실 국장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직원1급)	2015-12-02	2016-01-04	2016년 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됨. 신용정보 통합방식, 집중대상 신용정보 점검, 집중기관 역할정립 방안 등 통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결정하는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 후 해당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업무연관성이 의심됨.	제2호, 제8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전무			

2	감독서비스총괄국 금융지주팀장 / 일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 /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장 /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파견) / 저축은행감독국장	2016-02-05	2016-3월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장은 검사업무의 운영방향을 총괄, 조정하고 공동검사, 검사 진행상황 결과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역시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제3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검사감독이사			
3	특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기획팀장 / 특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장 /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 부국장·팀장 / 분쟁조정국 부국장·팀장 / 국제협력국 북경사무소장	2016-03-04	2016-03-2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금융기관과 수요자간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운영을 담당함. 금융투자회사에서의 금융분쟁 발생시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임.	제8호
		(주)유진투자증권 / 경영임원			
4	거시감독국 금융투자팀장 / 거시감독국 국내조사팀장 / 국제협력국 국제기구팀 부국장·팀장 / 총무국 실장 / 총무국 실장 / 국제협력국 북경사무소 실장	2016-03-04	2016-3월(심사 후)	거시감독국은 거시경제, 금융환경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하고, 금융시장을 정밀 모니터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심사대상자는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퇴직 후 취업한 기관이 금융투자회사이므로 업무연관성이 있음	제3호, 제6호
		(주)신한금융투자 / 상근감사위원			
5	IT서비스실 / IT검사지원2팀 부국장검사역 / IT감독국 검사지원3팀 부국장검사역 / 소비자보호총괄국 민원상담팀 부국장검사역 /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검사역자문역 / 소비자보호총괄국 원스톱서비스팀자문역	2015-06-30	2016-08-08	IT·전자금융·지급결제 업무 감독을 기본으로 전자금융 사고와 해킹 감독, 금융사 대상 IT 부문 검사, 전자금융업 인허가·등록 및 전자금융업자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IT감독국의 직무는 IT 감리업체인 씨에이에스와 업무연관성이 의심됨	제8호
		(주)씨에이에스 / 전문위원			
6	총무국 재무회계팀장 / 특수은행검사국 신용정보팀장 / 서민금융지원국 신용정보팀부국 장 / IT금융정보보호단 은행검사팀부국장 / 목포시청 산업단지정책실 (파견) / 제주지원장	2016-07-07	2016-09월	K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KB저축은행은 인터넷뱅킹 등 IT 금융서비스도 제공함. IT금융정보보호단 은행검사팀은 IT부문 검사 실시 및 검사자문 업무를 수행함. 퇴직 전 5년 이내에 맡았던 부서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3호
		(주)KB저축은행 / 상근감사위원			
7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일반은행1팀 전문반장(직원2급) / 생명보험검사국 검사1팀 전문반장 / 생명보험검사국 검사3팀 전문반장 / 생명보험검사국 검사2팀 전문반장 / 특수은행검사국	2015-06-30	2016-12-2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개인정보불법유통감시단은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대부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6호, 제8호

	검사2팀 전문반장 / 외환감독국 불법외환거래집중조사TF 전문반장파견 / 금융투자검사국 동양증권특별검사반 전문반장파견 / 특수은행검사국 검사3팀 전문반장 / 서민금융지원국 개인정보불법유통감시단 전문반장 파견	(주)리드코프 / 준법관리실장			
8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런던사무소(직원3급) /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 / 전국은행연합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추진T/F 파견(직원3급) /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 / 서민금융협의회 경인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파견(직원3급) / 총무국(직원3급) / 상호금융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 검사3팀(직원3급)	2017-06-02	2017-07-01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조치·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저축은행검사국 소속으로 퇴직 후 취업한 저축은행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3호, 제6호
	(주)오케이저축은행 / 상무				
9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직원2급) 파견 / 금융감독원 총무국 (직원2급):대기 / 상호금융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장 / 저축은행검사국장 / 거시감독국장 / 은행감독국장 / 총무국(직원1급) / 부원장보	2017-11-19	2018-5월	한국금융안전(주)는 금융기관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안전호송 및 경비분야 전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현금수송 사업을 운영함.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직위를 취업기관의 고객 금융사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로 활용할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의심됨.	제8호
	한국금융안전(주) / 대표이사				
10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직원2급): 파견 /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운영팀(직원2급) / 일반은행검사국 검사1팀(직원2급) /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직원2급) /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운영팀 금융교육자문역 / 금융교육국 일반금융교육팀 금융교육자문역	2018-12-31	2019-04-30	퇴직 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조치·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저축은행 검사국에서 근무하고 퇴직 후 대한저축은행에 재취업. 업무관련성이 있음.	제3호, 제6호
	(주)대한저축은행 / 상임감사				
11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2팀장 / 저축은행검사국 검사1팀장 / 인적자원개발실(직원2급):무보 직대기 / 상호금융검사국 검사3팀(직원2급) / 감독총괄국	2019-05-07	2019-6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의 검사지원단에는 자산운용이나 금융투자에 대한 검사지원도 포함되어 있음. 금융투자회사인 디에스투자증권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제3호, 제6호

	검사지원단(직원2급)	디에스투자증권(주) / 감사		되는 금융회사인만큼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퇴직기관: 금융위원회(4명)					
1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실 / 금융서비스국 은행과(5급)	2015-05-02	2015-6월 (심사후)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피검기관임. 특히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므로 업무연관성 있음.	제3호
		한국금융투자협회 / 부장			
2	금융서비스국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 금융위원회(고위공무원)	2014-06-10	2016-05-31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 허가·등록, 감독 및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함. 핀테크, 전자결재 사업을 운영하는 코나아이와 업무연관성이 있음.	제3호, 제8호
		코나아이(주) / 비상근고문			
3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2016-05-31	2016-07 (심사 후)	보험사업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피검기관임. 특히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므로 업무연관성 있음.	제3호, 제6호
		(사)생명보험협회 / 전무이사			
4	대통령실 비상경제상황실 (파견) /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외교통상부주OECD대표부 / 기획재정부(무보직) / 금융위원회 (무보직)	2015-03-26	2015-03-26	금융산업발전, 신용거래질서확립, 금융인의 복리후생증진 도모 등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피검기관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제3호, 제6호
		전국은행연합회 / 전무이사			

※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례

- 2015년 6월~2019년 5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6명(공정위 2명, 관세청 1명, 금감원 3명)의 퇴직 전

소속 기관 및 근무 부서·직위, 취업예정 기관·직위, 취업제한 사유 등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음.

- 공정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경쟁과의 업무를 맡았다가 퇴직 후 SK하이닉스에 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음. 동일한 기관·부서 출신으로 SK하이닉스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어([표8] 참고) 취업제한심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엄격히 이루어지는지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임.
- 그 외에도 ‘취업제한’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가 이후 취업한 기업·기관을 직접 감독, 조사하는 것이 아니어도 ‘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8호)로 보아 적극적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경우도 있음.
 - 공정위 가맹유통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으로 현대건설 상근자문역에 취업하려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경우
 -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지원국,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다가 연합자산관리의 감사로의 취업이 제한된 경우
 -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및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금감원 회계감독국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동부증권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사례 및 취업제한 사유와 비교해 보면, 앞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언급한 사례들이 더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내릴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표12] 2015.6.~2019.5.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례(공정위 2명, 관세청 1명, 금감원 3명)

N o.	퇴직 기관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취업예정 기관/직위	취업제한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1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장 / 운영지원과장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15-02-16	2015-6월 (심사후)	현대건설(주) / 상근자문역	제8호
2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실(5급) /	2018-03-16	2018-05-08	(주)SK하이닉스 / 고문	제6호, 제8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5급→4급)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4급)				
3	관세청	속초세관장 / 관세평가분류원장 / 인천세관 통관국장 / 서울세관 심사국장 / 용당세관장	2013-12-31	2015-7월	(사)무역관련지 식재산권보호 협회 / 상무이사	제6호, 제8호
4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파견 / 기업공시제도실장(직원2급) / 회계서비스2국장 / 회계감독2국장 / 감사실 국장 / 인재개발원 연수 / 경찰대학 연수 / 금융감독원 법무실 연구위원(직원1급)	2015-03-10	2015-10월 (심사 후)	동부증권(주) / 상근감사위원	제7호, 제8호
5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지원실장 / 저축은행검사1국장 / 저축은행검사국장 / 상호금융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장 /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 금융교육국(직원1급)	2016-04-08	2016-5월	연합자산관리 (주) / 감사	제8호
6	금감원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7-11-19	2018-3월	(사)금융보안원 / 원장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현황

1. 2015.6.~2019.5.기간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결과

- 2016.6.~2016.5. 기간 동안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중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8명이고 이중 89.7%에 해당하는 6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음.
-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5개 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기간별 추이를 보면, 2015.6.~2016.5. 기간 동안 9명, 2016.6.~2017.5. 기간 동안 15명, 2017.6.~2018.5 기간 동안 20명, 2018.6.~2019.5 기간 동안 24명이 심사를 받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표 13] 2015.6.~2019.5.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기간별 취업승인심사 현황

단위: 명

기간	전체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취업승인 비율
2015.6.~2016.5.	9	8	1	88.9%
2016.6.~2017.5	15	14	1	93.3%
2017.6.~2018.5	20	19	1	95%
2018.6.~2019.5	24	20	4	83.3%
전체	68	61	7	89.7%

- 2016.6.~2016.5. 기간 동안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결정 사유의 내용은 [표 14]와 같음.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제1호~제9호까지 제시된 기준에 따름.

※ 하나의 취업승인심사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복수로 인정(예를 들어 한 사례에 제7호와 제9호의 사유가 복수 인정)돼 취업승인되는 경우가

따라서, 각 '취업승인' 사유가 인용된 횟수를 모두 더하면 실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결정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5개 기관의 '취업승인' 시 가장 많이 인정된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 제9호로 각각 42회 인정되었음. 이외에도 제8호가 11회 인정됨. 이들 승인사유는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된 부서,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의 사업 간에 업무관련성이 없지 않으나, 심사대상자가 취업할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고, 취업한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
- 5개 기관의 '취업승인'에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다는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인정된 경우는 8건임.
- 2015.6.~2019.5. 기간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주요 사유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보다는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보임.

[표 14] 2015.6.~2019.5.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결정 사유

단위: 명

'취업승인' 결정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	취업승인자 수 ¹	비고 (해당 취업승인자의 전 소속 기관 등)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8	공정위 1명, 관세청 1명, 금감원 2명, 금융위 4명
제2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1	금감원 1명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호.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제6호.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3	금감원 2명, 금융위 1명

제7호.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42	관세청 41명, 국세청 1명
제8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11	공정위 1명, 관세청1명, 국세청 2명, 금감원 4명, 금융위 3명
제9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42	공정위 1명, 금감원 5명, 금융위 5명, 관세청 31 명

‘하나의 취업승인심사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복수로 인정(예를 들어 취업승인심사 1건에 제7호와 제9호의 사유가 동시에 인정)돼 취업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취업승인’ 사유가 인용된 횟수를 모두 더하면 실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결정 합계(61명)와 일치하지 않음.

- 2016.6.~2016.5.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46명이 관세청 퇴직공직자로 압도적으로 많음. 이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기관 퇴직공직자 중 67.7%에 해당함.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음.
- 그 외 금감원 9명, 금융위 6명, 국세청 5명, 공정위 2명의 퇴직공직자가 2016.6.~2016.5. 기간 동안 취업승인심사를 받음. 이 중 금감원 7명, 국세청 4명, 공정위 1명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짐.

[표 15] 2015.6.~2019.5.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각 기관별 취업승인심사 현황

단위: 명

기관명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전체 대비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비율
공정위	2	1	1	2.9%
관세청	46	44	2	67.7%
국세청	5	4	1	7.4%
금감원	9	7	2	13.2%

금융위	6	5	1	8.8%
전체	68	61	7	100%

- 2016.6.~2016.5. 기간 동안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관세청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받아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한국면세점협회로 ‘취업승인’ 결정 44명 중 33명(75%)가 이에 해당함. 취업제한심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승인심사를 거쳐 (주)삼구아이앤씨에 취업한 관세청 퇴직공직자도 다수(7명) 발견됨.
- 관세청은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모두 특정 협회나 특정 업체(한국면세점협회, 삼구아이앤씨)에 취업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특정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법령상 근거를 이유로, 한 국가기관이 그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특정 기관과 퇴직 후 취업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거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표16] 2015.6.~2019.5.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기관 유형 현황

No.	업체명	취업승인(비율)	특징
1순위	(사)한국면세점협회	33명 (75%)	-
2순위	(주)삼구아이앤씨	7명 (15.9%)	인천공항 인력 파견 업체(세관 전자택 부착, 면세점물류센터, 외곽특경대 등)
3순위	그랜드관광호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비아이디씨 등	4명 (9.1%)	-
전체		44명(100%)	-

취업제한심사에도 다수의 퇴직공직자들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각 기관의 업무영역에 따라 그와 유관된 특정 분야로 퇴직 후 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됨.

-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대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9명 중 173명(96.7%)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는 빈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수행 업무와 취업한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을 직접 대조해 살펴본 결과, 최소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됨에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짐.
-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관세청 퇴직공직자는 한국면세점협회, 국세청 퇴직공직자는 세무법인, 금감원과 금융위 퇴직공직자는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등 공정위를 제외하면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이 공직 업무와 관련된 특정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취업제한심사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취업승인심사 '취업승인' 사유 판단을 엄격히 심사해야 함.

퇴직공직자의 소속 기관의 특성에 맞춘 취업제한제도 운영 필요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심사해야 하고, 퇴직공직자의 부서의 업무관련성 평가범위 기준을 해당 '과'의 업무로 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규정¹⁴도 재검토가 필요함. 취업승인심사에서도 특히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 등에 따라 특정 자격증을

¹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¹⁵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가 온정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심사자료 및 심사결정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정부패의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취업제한제도를 포함한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통합해야 함.

¹⁵ 단,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직에서 퇴직해 변호사 개업한 자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자가 공직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했던 국가기관(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및 제4항 참고.

한편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는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근거로 제17조 제7항의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9.3.18.,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참고.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발행일 2019. 10. 3.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이광수 변호사)

담 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